「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지역의 방위산업 네트워킹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나.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다)「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라)「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2) 필요성 : 네트워크 지원사업 진행 경험과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킹, 사업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 :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운영·집행

1) 구미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지원

2) 「방산혁신기업」컨설팅, 세미나, 방위산업 포럼 등 지역 방산기업 경쟁력 제고

3) 방산 전시회 공동참가·참관 지원 등 방산 홍보 강화 등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바. 소요예산(산출근거) : 18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간접비	사업비	비고
180	15	8.5	156.5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구미시 첨단산업국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09.21)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4. 부서의견

가. 구미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나. 2027년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3)「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4)「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6년 구미시 첨단산업국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 자체 감사결과 : 안건 참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지역 방산산업 네트워킹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방산 분야 전문 인력과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해당 위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구미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 포럼 개최, 방산혁신기업 지원 등 지역 방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방산혁신기업 컨설팅, 전시회 지원 등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